

준법통제규정

제정 2015.12.29.

개폐정리 2019. 8.12.

개정 2019.11.26.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주택도시보증공사(이하 “공사”라 한다)가 제반 법규를 준수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을 도모하고 공사의 건전한 발전과 준법경영의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① 이 규정은 공사의 모든 업무와 임직원들의 활동에 대한 준법통제에 적용한다. 다만, 감사업무, 내부회계관리업무 및 리스크관리업무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② 준법통제와 관련하여 관계법령과 정관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,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세칙으로 정한다.

제3조(용어의 정의)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준법통제”란 공사가 업무상 준수해야 하는 관계법령, 정관·사규 및 윤리규범 등(이하 “법규”라 한다)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, 임직원의 법규준수 여부를 점검 및 지원하여 위법행위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고, 각종 법적 위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일체의 정책수립 및 통제활동 과정을 말한다.<개정 2019.11.26.>

2. “준법통제기준”이란 준법통제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이 규정 및 세칙을 말한다.<개정 2019.11.26.>

3. “준법통제체계”란 효과적인 준법통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구조, 업무분장 및 승인절차, 의사소통, 모니터링, 평가 등의 지원체계 전반을 말한다.

4. “법적 위험”이란 임직원이 법규를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민사·형사·행정적 책임이 발생하거나 공사에 손해가 발생할 위험을 말한다. <신설 2019.11.26.>

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에 대한 정의는 관계법령 및 제규정에 따른다.

제2장 준법통제기준

제4조(준법통제기준) ① 이 규정을 포함한 준법통제기준 및 공사의 모든 사규는 관계법령 및 정관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.

② 공사의 업무는 준법통제기준 및 사규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.

③ 공사는 준법통제기준의 준수 및 이해를 위하여 업무 프로세스 절차도 등 업무매뉴얼을 작성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.

제5조(준법 의무) ① 임직원은 준법통제기준 및 법규 등을 숙지하고 업무 수행시 준수하여야 한다.

② 임직원은 준법통제기준 및 법규에 위반되는 행위(이하 “위법행위”라 한다)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준법 의무의 세부내용은 세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19.11.26.>

제3장 준법통제조직

제6조(준법통제업무의 독립적 수행) ① 공사는 준법통제업무 소관부서 및 담당자가 독립적이고 실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<개정 2019.11.26.>

② 공사는 현재 또는 과거에 준법통제업무를 담당한 자에 대하여 그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.

제7조(준법통제조직) ① 공사는 준법통제업무 소관부서로 준법지원실을 두며 세부업무는 세칙으로 정한다.<개폐정리 2019. 8.12><개정 2019.11.26.>

② 준법통제업무 소관부서장(이하 “소관부서장”이라 한다)은 각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준법통제담당자(이하 “클린메이커”라 한다)를 임명하고, 클린메이커는 소속부서장을 보좌하여 준법통제업무를 수행하며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.<개정 2019.11.26.>

③ 준법통제업무의 중요사항 심의를 위하여 준법통제위원회를 설치하며 두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.<개정 2019.11.26.>

제4장 준법통제활동

제8조(준법통제기준 준수 점검) 소관부서장은 법규준수 및 위법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준법통제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할 수 있으며, 점검에 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.

[본조개정 2019.11.26.]

제9조(위반 시 처리) 소관부서장은 준법통제기준 위반사항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, 처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9.11.26.]

제10조(사전준법성 검토) 소관부서장은 공사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법규 준수 측면에서의 사전준법성 검토를 할 수 있으며 주요업무의 범위 등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.

[기존 제9조에서 이기 2019.11.26.]

제11조(일상적인 준법지원) 소관부서장은 임직원의 법규준수 향상을 위하여 일상적인 준법지원 활동을 수행하며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.

[기존 제10조에서 이기 2019.11.26.]

제12조(준법교육) 소관부서장은 체계적인 준법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임직원의 준법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.

[기존 제11조에서 이기 2019.11.26.]

제13조(법적 위험의 평가) ① 소관부서는 전사적 위험관리체제하에서 효

과적으로 작동하는 통합적인 법적 위험 평가 및 관리 체계를 위하여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운용한다.

② 소관부서는 법적 위험의 크기·발생빈도 등을 검토하여 위법의 발생가능성 등을 판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③ 법적 위험 대응에 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9.11.26.]

부칙<2015.12.29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사규의 개정) 사규관리규정 [별표1] 사규분류표에 다음 사항을 신설한다

분류	사규번호	사 규 명	공개여부	제개정 사전 예고 여부	소관부서
제17편 준법통제	17-1	준법통제규정	공개	예고	기획조정실

부 칙<2019.11.26.>

이 규정은 2019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.